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제 정의 사상*

— 가격이론과 대부이론을 중심으로

김 을**

[초 록]

이 논문의 목적은 토마스의 가격이론과 대부이론을 중심으로 그의 경제 정의 사상을 일별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정의로운 가격에 대한 토마스의 이론과 그의 대부 금지 논변이 하나의 공통된 통찰에 의해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하려 한다. 두 이론을 연결시키는 공통된 통찰은 ‘소유하지 않은 것을 팔아서 안 된다’는 도덕률로 표현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실이익(逸失利益)에 대한 요구권의 부정으로 나타난다. 토마스의 가격이론에서 나타나는 정의로운 가격 결정의 이중적 원리는 그의 대부이론에서 실질손실과 일실이익의 구별로 이어지게 된다. 토마스는 일실이익에 대한 요구권을 단호하게 부정하지만, 실질손실에 대한 요구권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양자를 구별해서 취급하는 토마스의 태도는, 윤리신학의 관점과 경제 현실 간의 긴장을 인정하고 양자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1045133).

** 대구가톨릭대학교 프란치스코칼리지 교수

주제어: 정의로운 가격, 필요, 대부, 실질손실, 일실이익
Just Price, Demand, Usury, *Dammum Emergens*, *Lucrum Cessans*

를 조화시키려는 입장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1. 문제제기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인간에게 유례없는 생산력 발전을 가능하게 해주었지만, 급기야 기후위기와 경제적 불평등 같은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과제를 인간에게 던져주고 있다. 1퍼센트도 안 되는 인구가 전 세계 부의 44퍼센트를 독점하고 있는 통계는 인류의 현실을 잘 보여주거니와, 이러한 극단적 불평등의 큰 원인은 산업과 현물시장의 논리마저 넘어서는 금융자본의 투기적 존재방식에 있다. 주식폭락장에서 공매도로 아프리카 십여 개 나라의 국가예산에 맞먹는 돈을 하룻밤 새 벌어들이는 투자자들에게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제 정의 사상은 애초에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약육강식이 곧 정의요 경제윤리인 사람들에게 토마스의 사상이 맞지 않아서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를 디폴트 체제로서 받아들이는 그들의 관점에서라면 자본주의 이전의 경제사상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저 시대착오적으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영구불변한 체제가 아니고 역사의 한 단계에 불과하다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시, 상업, 원거리 무역, 화폐경제 같은 자본주의 발생의 토대가 마련되던 중세 후기로 경제사상사 분석의 시야를 넓힐 이유가 충분할 것이다. 물론 역사적 거리를 무시하고 현대 경제학의 틀로 과거의 경제사상을 해석하려 해서는 곤란하겠지만, 냉정한 문헌 분석에 기초해 당시의 경제학적 문제성과 범주들을 재구성해내는 작업은, 단순히 자본주의에 대한 역사학적 이해지평을 넓히는 데뿐 아니라 현실의 경제적 부정의를 직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토마스의 가격이론과 대부이론을 중심으로 그의 경제 정의 사상을 일별하는 것이다. 정의로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

는가라는 질문과 대부가 허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중세 스콜라철학자들이 탐구했던 대표적인 경제학적 주제였다.¹⁾ 본 논문은 정의로운 가격에 대한 토마스의 이론과 그의 대부 금지 논변이 어떤 공통된 통찰에 의해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하려 한다. 두 이론을 연결시키는 공통된 통찰은 ‘소유하지 않은 것을 팔아서 안 된다’는 도덕률로 표현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실이익(逸失利益)에 대한 요구권의 부정으로 나타난다. 토마스의 가격이론에서 나타나는 정의로운 가격 결정의 이중적 원리는 그의 대부이론에서 실질손실과 일실이익의 구별로 이어지게 된다. 토마스는 일실이익에 대한 요구권을 단호하게 부정하지만, 실질손실에 대한 요구권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양자를 구별해서 취급하는 토마스의 태도는, 윤리신학의 관점과 경제 현실 간의 긴장을 인정하고 양자를 조화시키려는 입장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2장에서는 정의로운 가격 이론에 대해 논의하되, 토마스가 가격의 기준으로 수용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요 개념, 판매와 구매에 있어 정의로운 가격이 결정되기 위한 이중 원리, 자유로운 거래의 조건을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대부이론에 대해 논의하는 3장에서는, 소모재 개념에 기초한 대부 금지 논변, 토마스에 의한 대부 금지의 성격, 실질손실과 일실이익의 구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맺음말에서는 중세 경제철학에서 토마스 경제 정의 사상이 갖는 위치를 간략하게 평가할 것이다.

1) 토마스의 정의로운 가격 이론에 대해서는 이미 몇 편의 국내 선행 연구들(대표적으로는 손은실(2011),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로운 가격론에 대한 재해석」, 『서양중세사연구』 28, 서양중세사학회, pp. 129-158; 박은구(2015),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제사상(2)」, 『승실사학』 35, 승실사학회, pp. 345-380)이 존재한다. 그러나 토마스의 대부이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리스도교 교부 전통의 대부이론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최원오(2016), 「고리대금의 죄악성에 관한 교부들의 가르침」, 『가톨릭철학』 24, 한국가톨릭철학회, pp. 5-38이, 중세 교회법학 전통의 대부이론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남종국(2013), 「12세기 교회법학자 그라티아누스의 경제윤리」, 『대구사학』 112, 대구사학회, pp. 1-26가 있다.

2. 정의로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2.1. 교환적 정의와 가격의 기준

여타의 스콜라철학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정의로운 가격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의는 일차적으로 정의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텍스트에 준거를 두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윤리학』에서 정의의 일반적 개념과 특수한 개념을 구별한 후에, 특수한 개념을 다시 몇 가지로 세분화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정의로운 사람은 양 극단을 피하고 중용을 선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의는 “탁월성의 일부가 아니라 탁월성 전체”²⁾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철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탁월성에 공통되는 성질로서의 정의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특수한 탁월성을 구성하는 정의, 즉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동등성으로서의 정의다.

잘 알려져 있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성의 한 종류로서의 특수한 정의 개념을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한다. 첫째는 각자가 공동체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공동체에 대한 기여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지는 몫에서 실현되어야 할 정의다. 배분적 정의라고 불리는 이 정의는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에서 성립하며, 여기서 개인의 몫은 기하학적 비례에 따라 정해진다. 둘째는 두 개인 간의 상호 교섭에서 일방의 이익이나 손해를 바로잡는 정의, 곧 시정적 정의다. 한쪽이 더 큰 몫을 갖고 다른 한쪽이 더 작은 몫을 가졌을 때, 그 차이분의 산술적 중간이 바로 이 정의가 추구하는 목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세 번째 정의는 교환적 정의, 주고받음에 있어 그 주고받는 물건들이 비례적으로 상응할 때 성립하는 정의다. 이 정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환되는 것들이 서로 공동의 척도로 측정되어야 하는

2) *EN* V, 1, 1130a9.

데, 그것이 바로 돈이다.³⁾ 그런데 돈이 척도가 되는 근본적인 까닭은, 돈으로 측정되는 물품들에 대한 필요(chreia)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돈은 필요의 “교환가능한 대리물”⁴⁾로서 척도의 기능을 한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로운 가격 이론이 교환적 정의에 대한 탐구라는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물품을 돈과 교환할 때, 즉 물품을 판매할 때, 필요를 대리하는 돈과 물품 사이에 등가성이 성립하면 교환의 정의가 실현되거나, 그 등가성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가격인 것이다.⁵⁾ 이 가격에 의해 판매자와 구매자는 어느 한쪽의 부당한 손해 없이 상호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가격이 산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토마스의 가격 이론의 핵심은 바로 이 기준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정의로운 가격이 반영해야 할 등가성이 교환에 참가하는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환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의 차이는 여기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토마스는 분배적 정의의 개념을 사용할 때 분배의 몫이 사회적 지위 또는 성과에 대한 기여 정도에 의존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⁶⁾ 교환적 정의에서 인간의 상이한 조건은 문제가 되지

3) *EN* V, 5, 1133a20.

4) *Ibid.*, 1133a30.

5) *Quodlibet* II, q.5, a.2, c. “Est ergo iusta venditio, quando pretium acceptum ab habente aequatur rei venditae; iniusta autem, si non aequetur, sed plus accipiat.”

6) *Quodl.* I, q.7, a.2, c. “(…) in quolibet artificio simpliciter melior est qui disponit de artificio, et dicitur architector, quam aliquis manualis qui opera exequitur secundum quod ei ab alio disponitur; unde et aedificiis construendis maiori mercede conducitur qui disponit de aedificio, licet nihil manibus operetur, quam manuales artifices, qui dolant ligna et incidunt lapides.”; *De regno*, lib.1, c.10, “In artificio etiam maius existimatur maiorque conducitur pretio architector, qui aedificium disponit, quam artifex, qui secundum eius dispositionem manualiter operatur. Et in rebus bellicis maiorem gloriam de victoria consequitur prudentia ducis, quam militis fortitudo.”;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자유토론문제』 제6권 제5문에서 십일조 문제를 다룰 때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언급은 교환적 정의에 대한 토마스의 이러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의에서 중간은 인간의 상이한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양에 관련될 뿐이다.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구매하든 부유한 사람에게 구매하든, 그 물건의 가치만큼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마땅한 몫을 돌려주는 것이 정의의 행위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마땅한 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준다는 것과 그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가난한가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⁷⁾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개인적 조건이 배제된다면,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우리가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가격 결정 요인에서 사물의 자연적 완전성, 즉 존재론적 가치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존재론적 가치의 위계에서 보자면 쥐 한 마리가 생명이 없는 진주보다 더 상위에 있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미 『신국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쥐 한 마리보다 빵 한 덩어리를 선택하고, 심지어 노예 소녀가 진주보다 더 값싸게 팔려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⁸⁾ 토마스는 이 유명한 사례를, 자연적 완전성의 질서를 거스르는 인간적 욕구의 부당함을 말하려 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맥락에서 떼어내, 정의로운 가격이 자연적 완전성과 무관하게 결정된다는 자신의 관점을 피력하기 위해 끌어온다.

7) *Quodl.* VI, q.5, a.4, c. “(…) in iustitia non variatur medium secundum diversas personae conditiones, sed attenditur solum ad quantitatem rei. Qui enim emit rem aliquam, debet tantum solvere quantum valet, sive a paupere, sive a divite emat. Reddere autem debitum est actus iustitiae; et ideo ad hoc quod alicui reddatur, quod ei debetur, non refert utrum sit dives vel pauper.” 십일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분배가 아니라 사제와의 교환이다.

8) *De civitate Dei*, XI, 16.

“앞서 말했듯이, 모든 것은 어떤 한 가지 [기준]에 의해 공통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 사물의 진리에 따라 모든 것을 측정하는 그 한 가지 [기준]은 필요(indigentia)다. 인간의 필요는 교환 가능한 모든 것을 아우르거니와, 모든 것이 인간의 필요와 관계하기 때문이다. 즉, 사물은 자신의 자연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는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감각적 생물체인 쥐 한 마리가 무생물체인 진주 하나보다 더 큰 가격을 가지지 않겠는가. 그러나 사물에 가격이 매겨지는 까닭은, 인간들이 자신의 사용을 위해 사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⁹⁾

교환적 정의에 대한 『윤리학주해』의 이 설명은 토마스가 사물의 내재적 가치를 가격의 결정 요인에서 배제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사물 안에 자연적 완전성에 상응하는 모종의 내재적, 본성적 가치를 가정하고 인간의 필요가 그것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 경제적 영역에서는 오히려 인간의 필요에 사물의 ‘본성적 가치’가 달려 있다. 그리고 인간은 규약을 통해서, 즉 돈을 통해서 그 가치를 양화시키고 서로 비교, 측정한다. “모든 것은 본성 상 필요에 의해 측정되고, 인간의 규약 상 돈에 의해 측정된다.”¹⁰⁾

2.2. 정의로운 가격 결정의 이중적 원리

『윤리학주해』에서 상이한 재화의 가치를 비교하고 측정하는 기준, 곧

-
- 9) *Sententia Ethicorum*, lib.5, l.9, n.4, “(…) omnia possunt commensurari per aliquid unum, ut dictum est; hoc autem unum, quod omnia mensurat secundum rei veritatem est indigentia, quae continet omnia commutabilia, in quantum scilicet omnia referuntur ad humanam indigentiam; non enim appetantur res secundum dignitatem naturae ipsorum: alioquin unus mus, quod est animal sensibile, maioris pretii esset quam una margarita, quae est res inanimata: sed rebus pretia imponuntur, secundum quod homines indigent eis ad suum usum.”
- 10) *Sent. Ethic.*, lib.5, l.9, n.6, “omnia mesurantur per indigentiam naturaliter, et per denarium secundum conductum hominum (…).”

가격의 결정 기준이 인간의 필요라는 점이 확증된다면, 『신학대전』에서는 상업적인 거래에서 제기될 수 있는 현실적 질문들을 통해 정의로운 가격의 결정 방식이 논의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대전』 2부 2편 제77문 제1절의 질문, 즉 “물건을 제 가치보다 더 비싸게 팔아도 되는가”(utrum liceat aliquid vendere plus quam valeat)라는 질문이다. 단순명쾌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대부이론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격 결정의 근본적인 이중원리가 제시되기 때문이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논의를 토마스가 인정법이 아니라 신법의 관점에서 전개하려 한다는 점을 확인하도록 하자. 그가 소개하는 바, 물건을 제 가치보다 더 비싸게 팔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한 가지 근거는 인정법에서 그것을 용인한다는 사실이다.¹¹⁾ 이에 대한 토마스의 답변은 대략 다음과 같이 재구성될 수 있다: 법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 행위의 잣대 혹은 척도인데, 척도는 측정되는 것과 동질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인정법은 사람들 다수에게 해당되며 다수는 탁월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에, 인정법이 처벌하는 대상은 다수가 멀리해야 할 위험한 자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악인들뿐이다. 말하자면, 인정법의 목적은 승인이 아니라 벌하지 않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공동생활을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이 점에서 인정법의 관점은 탁월성에 반대되는 것들을 면책하지 않는 신법의 관점과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정법이 — 부당이득이 아주 과도하지 않은 이상¹²⁾ — 물건의 가치보다 더 비싸게 파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 반면에, 신법은 정의로운 가격의 준수를 엄격하게 요구한다.¹³⁾

11) *Sum. theol.* II-II, q.77, a.1, ob.1.

12) 로마법은 그 한도를 정의로운 가격의 2분의 1 수준으로 보았다. O. Langholm (1993), *Economics in the Medieval Schools*, Leiden: Brill, p. 225 참조.

13) *Sum. theol.* II-II, q.77, a.1, ad 1. “(...) lex humana populo datur, in quo sunt multi a virtute deficientes, non autem datur solis virtuosus. Et ideo lex humana non potuit prohibere quicquid est contra virtutem, sed ei sufficit ut prohibeat ea quae destruant

본론으로 들어가, 제기된 질문에 대한 대답의 요지를 살펴보자. 토마스 는 상업 행위와 관련된 사기를 전적으로 비난한 후에, 판매와 구매가 두 가지 관점에서 고찰될 수 있음을 환기시킨다.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므로 전체를 인용해보자.

“그런데 사기와 상관없이 우리는 구매와 판매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그 자체로서 [말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구매와 판매는 양쪽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즉 한쪽이 다른 쪽의 물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반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도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철학자가 『정치학』 1권에서 말한 바를 통해 드러난다. 그런데 공동의 유익을 위해 도입되는 것은, 어느 한쪽보다 다른 한쪽에서 더 부담이 가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그들 간에서는 [교환되는] 물건의 동등성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리학』 5권에서 말하듯, 인간에 의해 사용되는 물건의 [가치의] 양은 주어진 가격에 따라 측정되며, 그 가격을 위해 돈이 고안되었다. 따라서 가격이 물건의 가치의 양을 넘어서거나 반대로 물건의 가치를 넘어서면, 정의의 동등성은 사라진다. 따라서 물건을 그 가치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싸게 구매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의하고 적법하지 못하다.

둘째, 우연적인 의미에서 구매와 판매가 한쪽의 유익과 다른 쪽의 손실로 이어지는 한에서 구매와 판매에 대해 논할 수 있다. 예컨대 **한 사**

hominum convictum; alia vero habeat quasi licita, non quia ea approbet, sed quia ea non punit. Sic igitur habet quasi licitum, poenam non inducens, si absque fraude venditor rem suam supervendat aut emptor vilis emat, nisi sit nimius excessus, quia tunc etiam lex humana cogit ad restituendum, puta si aliquis sit deceptus ultra dimidiam iusti pretii quantitatem. Sed lex divina nihil impunitum relinquit quod sit virtuti contrarium. Unde secundum divinam legem illicitum reputatur si in emptione et venditione non sit aequalitas iustitiae observata. Et tenetur ille qui plus habet recompensare ei qui damnificatus est, si sit notabile damnum. Quod ideo dico quia iustum pretium rerum quandoque non est punctaliter determinatum, sed magis in quadam aestimatione consistit, ita quod modica additio vel minutio non videtur tollere aequalitatem iustitiae.”

람이 어떤 물건의 소유를 대단히 필요로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이 없다면 손해를 겪는 상황처럼 말이다. 이러한 경우에 정의로운 가격은 판매되는 물건의 가치에 관계할 뿐 아니라 판매자가 판매로부터 입은 손해에도 관계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어떤 것이 그것의 가치 자체보다 적법한 방식으로 더 비싸게 팔릴 수 있다. 물론 소유자가 갖는 가치보다 더 비싸게 팔리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받아서 그로부터 많은 소용을 누리지만, 그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그 물건을 갖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겪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격을 올려 팔아서는 안 된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남[구매자]에게 생겨난 이익은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의 조건에서 기인한 것이며, 그 누구도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남에게 팔아서는 — 자신이 입은 손해를 [가격에 반영해] 팔수는 있겠으나 — 안 되기 때문이다.¹⁴⁾

14) *Sum. theol.* II-II, q.77, a.1, c. “(…) de emptione et venditione dupliciter loqui possumus. Uno modo, secundum se. Et secundum hoc emptio et venditio videtur esse introducta pro communi utilitate utriusque, dum scilicet unus indiget re alterius et e converso, sicut patet per philosophum, in I Polit. Quod autem pro communi utilitate est inductum, non debet esse magis in gravamen unius quam alterius. Et ideo debet secundum aequalitatem rei inter eos contractus institui. Quantitas autem rerum quae in usum hominis veniunt mensuratur secundum pretium datum, ad quod est inventum numisma, ut dicitur in V Ethic. Et ideo si vel pretium excedat quantitatem valoris rei, vel e converso res excedat pretium, tolletur iustitiae aequalitas. Et ideo carius vendere aut vilius emere rem quam valeat est secundum se iniustum et illicitum. Alio modo possumus loqui de emptione et venditione secundum quod per accidens cedit in utilitatem unius et detrimentum alterius, puta cum aliquis multum indiget habere rem aliquam, et alius laeditur si ea careat. Et in tali casu iustum pretium erit ut non solum respiciatur ad rem quae venditur, sed ad damnum quod venditor ex venditione incurrit. Et sic licite poterit aliquid vendi plus quam valeat secundum se, quamvis non vendatur plus quam valeat habenti. Si vero aliquis multum iuvetur ex re alterius quam accipit, ille vero qui vendidit non damnificatur carendo re illa, non debet eam supervendere. Quia utilitas quae alteri accrescit non est ex vendente, sed ex conditione ementis, nullus autem debet vendere alteri quod non est suum, licet possit ei vendere damnum quod patitur.”

먼저 토마스는 우연적 요인을 배제하고 판매와 구매를 그 자체로 놓고 보자고 한다. 새로울 것이 없는 말이지만, 이렇게 단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어느 한쪽에 이득이 가고 다른 쪽에 부담이 가는 방식으로 거래 계약이 체결되어서는 안 된다. 가격은 물건의 가치에 따라 — 그리고 이 가치는 인간의 필요를 반영한다 — 그 가치와 동등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이다. 토마스는 현실적 거래에서 판매자의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간파하고 그 지점을 건드린다. 예컨대 내게 어떤 물건이 없을 때 내가 손해를 보지만 타인이 그 물건을 아주 긴급하게 필요로 해서 내가 그에게 물건을 파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토마스는 이 경우, 물건 자체의 가치 뿐 아니라 나의 손해 역시 가산하여 물건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구매자의 이익이 판매자의 상대적 손해를 통해 실현된다면, 정의로운 가격은 그 손해를 보전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토마스는 어떤 사람이 구매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지만 그 이익이 판매자의 손해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즉 판매자가 그 물건이 없다고 특별히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 경우도 가정한다. 이러한 경우 판매자는 물건을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아서는 안 된다. 구매자의 이익은 구매 행위 뿐 아니라 구매자의 조건에서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토마스는 이 경우 구매자가 자기 자신의 선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례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일 뿐이다.¹⁵⁾

2.3. 자유거래의 조건

정의로운 가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상의 이중적 원리와 더불어 자유거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거래가 자유롭지 않다면, 정의로운 가격이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거래가 존재하기 위한 조

15) *Ibid.*, “Ille tamen qui ex re alterius accepta multum iuvatur, potest propria sponte aliquid vendenti supererogare, quod pertinet ad eius honestatem.”

건은 무엇일까? 대부이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를 간략히 짚고 넘어가자. 우리가 실마리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토마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 『윤리학주해』에서 말하는 “그 누구도 부정의를 자발적으로 겪지 않는다”는 명제일 것이다. 부정의는 비자발적으로 겪어질 뿐이다. 그런데 부정의가 비자발적으로 겪어지는 방식에는 강제와 무지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거래는 강제와 무지의 배제를 조건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토마스는 경제적 강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그러나 스콜라철학에서 경제적 강제는 통상적으로 극단적인 궁핍 상황을 가리킨다. 진주는 빵 한 덩어리보다 값진데, 기아선상에 있는 사람은 진주를 내주고 빵을 살 것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사기가 아니라 경제적 강제다. 진주를 지불하겠다는 동의는 ‘단적인 동의’라기보다는 급박한 생존의 상황을 전제로 한 동의이기 때문이다.¹⁶⁾ 토마스가 가격 결정의 기준이라고 말한 인간의 필요는 이런 의미의 극단적인 궁핍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시장에서 표현되는 종류의 필요라고 보아야 한다.¹⁷⁾

토마스가 보다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무지다. 거래에서의 사기란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의 무지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포도주를 몰과 섞어 팔아 실체를 속이는 경우든, 약한 동물을 건강한 동물처럼 팔아 질을 속이는 경우든, 측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양을 속여 파는 경우든, 토마스는 판매되는 물건의 흠이 판매 자체를 불법적인 것으로 만든다고 강조한다.¹⁸⁾ 판매자 자신이 몰랐을 경우는 죄가 아니겠지만, 알게 된 순간 비싸게 받은 차액을 돌려주어야 하며, 구매자 역시 구리인줄 알고 샀는데 금일 경우라면 알게 된 순간 차액을 돌려주어야 한다.¹⁹⁾ 따라서 판매자는, 판매

16) 이것은 대부업자에게 — 특히 고리로 —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도 해당된다. *Quodl.* I, q.7, a.2, c. *Sum. theol.* II-II, q.78, a.1, ad 7.

17) Langholm, *op. cit.*, p.235; p.360.

18) *Sum. theol.* II-II, q.77, a.2, c.

19) *Ibid.*, “Si vero eo ignorante aliquis praedictorum defectuum in re vendita fuerit,

하는 물건의 흠이 말해주지 않아도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흠에 대해서 구매자에게 말해주는 것이 의무다. 물건의 장점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겠지만, 장점의 손상에 내재한 위험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의 무지를 제거해줄 의무가 있다.²⁰⁾

3. 대부는 왜 금지되는가?

3.1. 토마스의 대부 금지 논변

토마스 가격이론에 내재한 통찰들은 결국 한 가지 단순한 원칙으로 귀결된다. 그것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팔아서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대부이론에도 일관되게 적용된다. 대부(usura)²¹⁾란 돈을 빌려주고 나

venditor quidem non peccat, quia facit iniustum materialiter, non tamen eius operatio est iniusta, ut ex supradictis patet, tenetur tamen, cum ad eius notitiam pervenerit, damnum recompensare emptori. Et quod dictum est de venditore, etiam intelligendum est ex parte emptoris. Contingit enim quandoque venditorem credere suam rem esse minus pretiosam quantum ad speciem, sicut si aliquis vendat aurum loco aurichalci, emptor, si id cognoscat, iniuste emit, et ad restitutionem tenetur.”

20) *Sum. theol.* II-II, q.77, a.2, ad 3.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토마스가 거래에서의 정의의 의무를 현재의 가격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미래 가격의 예측에 관한 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자신의 예측을 말해줄 의무가 없다. 잘 알려진 예를 들자면, 곡물을 실은 마차가 며칠 후 또 도착한다는 사실을 곡물판매상이 구매자에게 말해줄 의무가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 토마스는 말해주면 큰 덕이겠으나 그것이 정의의 의무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ad. 4) 말하자면, 곡물판매상의 도착은 미래의 가격에 관련되는 것이고 물건의 흠은 현재의 가격에 관련된 것이므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21) 지금까지 교부문헌이나 스콜라철학문헌에서 ‘usury’(라: usura)는 고리대금업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개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리’가 아니라, 얼마이든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체의 행위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자는 ‘대부’라는 다소간 중립적인 번역어를 선택한다. 물론 이것은 ‘대부업’ 일반을 가리

서 원금과 더불어 그 빌림의 대가로 이자를 얻어 돌려받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뿐만 아니라, 순수한 현금 대출 뿐 아니라 신용거래(외상)에서 가격을 높이 책정한다든가, 선지불 거래에서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것도 대부의 성격을 갖는다고 토마스는 본다.²²⁾ 그가 이러한 일체의 대부를 금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부가 존재하지 않은 것을 파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의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유권과 사용권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다음의 인용문을 보자.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데 사용하면 포도주를 소진하고 밀을 음식으로 사용하면 밀을 소진하는 것처럼, 어떤 사물은 그 사용이 곧 소진을 뜻한다. 따라서 이런 사물에서는 사물의 사용은 사물 자체와 서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고, 사용을 용인 받는 사람은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사물 자체에 대해 용인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런 사물들에서는 대출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포도주와 포도주의 사용을 따로따로 팔기를 원한다면, 그는 같은 사물을 두 번 파는 것이거나 존재하지 않은 것을 파는 것이리라. 따라서 그는 명백하게 부정의의 죄를 짓게 되리라.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포도주나 빌려준 물건에 상응하는 것을 돌려주고 사용의 값을 치르라며 두 배의 상환을 요구하는 자 — [이 자의 행위가] 대부라고 불린다 — 는 부정의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²³⁾

키기도 하고 개별 ‘대부행위’를 가리키기도 하는 개념이다.

22) *Sum. theol.* II-II, q.78, a.2, ad 7.

23) *Sum. theol.* II-II, q.78, a.1, c. “(…) quaedam res sunt quarum usus est ipsarum rerum consumptio, sicut vinum consumimus eo utendo ad potum, et triticum consumimus eo utendo ad cibum. Unde in talibus non debet seorsum computari usus rei a re ipsa, sed cuicumque conceditur usus, ex hoc ipso conceditur res. Et propter hoc in talibus per mutuum transfertur dominium. Si quis ergo seorsum vellet vendere vinum et seorsum vellet vendere usum vini, venderet eandem rem bis, vel venderet id quod non est. Unde manifeste per iniustitiam peccaret. Et simili ratione, iniustitiam committit qui mutuat vinum aut triticum petens sibi duas recompensationes, unam quidem

사물의 실체를 사라지지 않게 하면서 사물을 사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이 경우와 달리, 집이나 토지처럼 자기가 사용하면서 남에게 소유권을 넘기거나 남에게 사용을 허락하면서 소유권은 자기가 보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²⁴⁾ 요컨대 사물은 그 본성에 따라 사용과 소유가 분리될 수 없는 것, 그리고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나뉜다. 토마스는 돈이 전자에 해당한다고 망설임 없이 강조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학』 5권과 『정치학』 1권에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돈은 근본적으로 교환을 위해서 고안되었으며, 돈의 본래적이고 근본적인 사용은 교환에서 지불됨에 따른 소모 또는 분배다. 따라서 빌려준 돈의 사용에 대해 가격을 받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적이다.”²⁵⁾

토마스는 감가상각을 겪는 현물 임대에 한해 임대에 대한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돈은 감가상각을 겪지 않는다. 그런데 토마스의 대부 금지 논변은 단순한 감가상각의 여부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지점에서 성립한다. 즉, 대부가 불법적인 까닭은 단순히 돈이 감가상각을

restitutionem aequalis rei, aliam vero pretium usus, quod usura dicitur.”

24) *Ibid.*, “Quaedam vero sunt quorum usus non est ipsa rei consumptio, sicut usus domus est inhabitatio, non autem dissipatio. Et ideo in talibus seorsum potest utrumque concedi, puta cum aliquis tradit alteri dominium domus, reservato sibi usu ad aliquod tempus; vel e converso cum quis concedit alicui usum domus, reservato sibi eius dominio. Et propter hoc licite potest homo accipere pretium pro usu domus, et praeter hoc petere domum commodatam, sicut patet in conductione et locatione domus.”

25) *Ibid.*, “Pecunia autem, secundum philosophum, in V Ethic. et in I Polit., principaliter est inventa ad commutationes faciendas, et ita proprius et principalis pecuniae usus est ipsius consumptio sive distractio, secundum quod in commutationes expenditur. Et propter hoc secundum se est illicitum pro usu pecuniae mutuatae accipere pretium, quod dicitur usura. Et sicut alia iniuste acquisita tenetur homo restituere, ita pecuniam quam per usuram accepit.” 『악론』 제13문 4절에서도 동일한 논변이 전개된다.

겪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대출의 형태로 빌려준 돈은 사용하는 순간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일차적으로, 토마스가 은전이라는 물리적 실체로서의 돈 개념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은전은 교환수단으로서 지불되는 순간 나의 손에서 그 존재가 사라지고 만다. 물론 은전이 과사용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경우라면 예외가 성립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²⁶⁾ 돈이 그 일반적 본성에 따라 교환수단으로 사용되는 한, 돈을 빌려줄 때에 이익을 바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인용문이 명시적으로 말하듯,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돈의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이전한다는 것이다. 채무자는 나중에 빌린 액수를 갚아야 하지만 반드시 자신이 빌린 그 은전으로 갚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자체가 이 사실을 말해준다.²⁷⁾ 대부가 죄인 까닭은 돈을 빌려줌으로써 소유권을 이전하면서도 마치 소유와 사용이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소유권을 계속 주장한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돈에 있어 소유와 사용이 분리될 수 없는 까닭은 돈이 일종의 소모재에 속하며, 용익(ususfructus) 즉 생산의 가능성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 ‘돈의 불임성’(sterility of money)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²⁸⁾ 「시편」 14장을 주해하며 하는 말처럼, 대부업자는 존재하지 않는 결실을 판다.²⁹⁾

26) *Sum theol.* II-II, q.78, a.1, ad 6; *De malo*, q.13, a.4, ad 15.

27) O. Langholm, *op. cit.*, p. 243.

28) D. Wood (2002), *Medieval Economic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92-195.

29) *Super Psalmos* 14, n.5, “(…) prohibetur, quod non detur fratri ad usuram, quia vendit quod non est, cum non habeat usumfructum.”

3.2. 대부 금지의 성격

토마스의 대부 금지 논변은 그가 기본적으로 대부를 엄격하게 부정하는 교부 이래의 전통 윤리신학의 견해를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³⁰⁾ 토마스는 대부를 허용하고 있던 당시의 세속법과 자신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³¹⁾ 인간의 현실적 조건 때문에 죄를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는 세속의 인정법과 달리, 대부는 그 자체로 죄다. 즉, “대부는 금지되기 때문에 죄인 것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에 금지된다.”³²⁾ 토마스는 『신학대전』 2부 1편 제78문 제1절에서 위와 같은 논변으로 대부가 죄라는 것을 증명한 후, 그 논리적 귀결로서, 돈을 빌려주고 원금 이외의 다른 사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제2절). 순수한 감사의 표시로 어떤 것을 더 준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약정을 통해 돈이나 돈으로 측정될 수 있는 물건을 더 돌려받는 일은 금지되어야 한다.³³⁾

더 나아가 토마스는 대부 행위로부터 어떤 이득을 본 자는, 그 이득 일체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제3절). 위에서 언급한 사용과 소진의 관계에 따른 사물의 구별이 여기서도 등장한다. 돈, 곡물, 포도주 같은 것은 그것의 사용이 곧 소모를 뜻하기에 법률상 용익권을 지닐 수 없거니와,

30) 교부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최원오(2015), 「고리대금의 죄악성에 관한 교부들의 가르침」; 바실리오스; 박노양 역(2018), 「시편 15에 대한 설교 2」, 『부와 가난』, 서울: 정교회출판사, pp. 130-145을 참조하라.

31) *Sum. theol.* II-II, q.78, a.1, ad 3.

32) *De malo*, q.13, a.4, c. “Nec ideo est peccatum quia est prohibitum; sed potius ideo est prohibitum.”

33) *Sum. theol.* II-II, q.78, a.2, c. “Et ideo sicut si aliquis pro pecunia mutuata, vel quacumque alia re quae ex ipso usu consumitur, pecuniam accipit ex pacto tacito vel expresso, peccat contra iustitiam, ut dictum est; ita etiam quicumque ex pacto tacito vel expresso quodcumque aliud acceperit cuius pretium pecunia mensurari potest, simile peccatum incurrit.”

만일 대부업자가 이런 것을 이자로 갈취했을 경우에, 대부업자는 애초의 소유자, 즉 대부를 받았던 자에게 자신이 갈취한 것만 돌려주면 된다. 그러나 집이나 토지처럼 용익권을 지니는 항구재를 이자로 갈취했을 경우, 그는 집이나 토지 뿐 아니라 그로부터 얻어지는 결실들도 상환해야 한다. 그것들은 본래 타인(대부를 받았던 자)이 소유권을 지니는 사물의 결실이고 따라서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³⁴⁾

강력한 도덕적 비난으로서의 대부 금지의 성격은, 대부를 받는 자의 입장에서 대부에 대해 묻는 제4절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서 토마스는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허용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제4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대부를 받는 자들에 대한 면책이다. 토마스는 대부가 죄이고, 그 누구도 타인을 범죄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그 누구도 타인을 대부 행위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나 이웃의 생존이라는 현실적 필요 때문에 대부를 청하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말하자면 이들은 죄가 아니라 선을 지을 기회를, 즉 대부가 아니라 단순한 빌려줌의 기회를 주었을 뿐이다.³⁵⁾ 둘째는 대부를 하는 자들을 강도에 비유한다는 점이다. 대부업자는 칼을 들고 보물이 있는 곳을 말하라고 타인을 위협하는 강도와 같다. 생존 때문에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자들은, 보물이 있는 곳을 강도에게 알려줌으로써 그가 강탈의 죄를 짓는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만 자신의 생명을 구할 뿐인 강도 피해자와 같다.³⁶⁾ 강

34) *Sum. theol.* II-II, q.78, a.3, c.

35) *Sum. theol.* II-II, q.78, a.4, c. “Ita etiam in proposito dicendum est quod nullo modo licet inducere aliquem ad mutuandum sub usuris, licet tamen ab eo qui hoc paratus est facere et usuras exercet, mutuum accipere sub usuris, propter aliquod bonum, quod est subventio suae necessitatis vel alterius.”; ad 1 “(…) ille qui accipit pecuniam mutuo sub usuris non consentit in peccatum usurarii, sed utitur eo. Nec placet ei usurarum acceptio, sed mutuatio, quae est bona.”; ad 2 “ille qui accipit pecuniam mutuo sub usuris non dat usurario occasionem usuras accipiendi, sed mutuandi, ipse autem usurarius sumit occasionem peccandi ex malitia cordis sui.”

도에게 협조했다고 강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강도 피해자를 비난해야 강도를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엄격한 입장은, 역설적으로 경제적 현실이 윤리신학적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은연중에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다. 신법 및 자연법의 원칙과 인정법의 현실을 구별하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자.

“인정법은 불완전한 인간의 조건 때문에 어떤 죄들을 처벌하지 않은 채로 남겨둔다. 불완전한 인간에게 있어 모든 죄들에 처벌이 결부되어 엄격하게 금지된다면 여러 유익이 장애를 갖게 될 것이다.”³⁷⁾

“실정법은 원칙적으로 다수의 공동선을 지향한다. 그런데 어떤 악을 막으면 공동체에 커다란 피해가 나타나는 일이 때때로 발생한다. 따라서 실정법은, 부정의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더 큰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어떤 [나쁜]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신은 악에서 선이 나오는 방식을 알고 있 거니와, 신 역시 악에서 나오는 선이 장애를 겪지 않도록 하려고 세상에서 악의 발생을 허용하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서 실정법은, 사람들이 때때로 벌린 돈 — 설사 그것이 대부에서 벌린 돈이라 하더라도 — 으로부터 얻는 여러 유익 때문에 대부를 허용한 것이다.”³⁸⁾

36) *Ibid.* “Sicut etiam licet ei qui incidit in latrones manifestare bona quae habet, quae latrones diripiendo peccant, ad hoc quod non occidatur.”; *De malo*, q.13, ad 19. O. Langholm (1998), *The Legacy of Scholasticism in Economic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67.

37) *Sum. theol.* II-II, q.78, a.1, ad 3. “(…) leges humanae dimitunt aliqua peccata impunita propter conditiones hominum imperfectorum, in quibus multae utilitates impedirentur si omnia peccata districte prohiberentur poenis adhibitis. Et ideo usuras lex humana concessit, non quasi existimans eas esse secundum iustitiam, sed ne impedirentur utilitates multorum.”

38) *De malo*, q.13, a.4, ad 6. “(…) ius positivum principaliter intendit bonum commune multitudinis. Contingit autem quandoque quod si impediatur aliquod malum, provenit maximum detrimentum communitati: et ideo quandoque ius positivum permittit

토마스는 신법 및 자연법과 세속의 인정법이 대부 금지 문제에 있어 다른 결론을 내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세속법이 대부를 허용하는 이유는, 말하자면 세속법의 대상 영역이 신법 및 자연법과 다르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가격 이론에서도 언급되듯이, 신법은 부덕(不德)함에 대한 징계의 예외를 남겨두지 않음에 비해, 세속법은 탁월성을 지니지 못한 다수 인간의 삶에 관계하며 공동체의 존립을 파괴할 수 있는 악인을 처벌할 뿐이다. 그런데 위 인용문에서 드러나는 바, 토마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실적인 유익을 염두에 두었을 때 대부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다. 대부업자는 강도나 마찬가지지만, 그 강도에게 돈을 빌려 생존이나 생업의 선익을 이루는 사람도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토마스는 대부를 비난하는 윤리신학의 완고한 전통을 견지하면서도, 대부가 성행하는 현실의 경제 과정에 대해 완전히 눈을 감고 있지 않았다. 실정법의 차원에서 대부를 일종의 필요악으로서 인정하는 토마스의 언급은, 14세기 초반 스콜라철학자들에게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바 윤리신학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의 긴장이라는 요소가 그의 이론 안에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3.3. 실질손실과 일실이익

대부와 관련된 경제적, 법적 현실에 대한 토마스의 고려는 소위 실질손실(damnum emergens)과 일실이익(逸失利益, *lucrum cessans*)에 대한 논의에서도 드러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손실에 대한 보상 요구권을 지니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빌려주고 나서 원금 이외의 사례를 기대하는 것은

aliquid dispensative, non quia sit iustum id fieri, sed ne communitas maius incommodum patiatur; sicut etiam Deus aliqua permittit mala fieri in mundo, ne impediatur bona quae ex his malis ipse elicere novit. Et hoc modo ius positivum permisit usuras propter multas commoditates quas interdum aliqui consequuntur ex pecunia mutuata, licet sub usuris.”

적법하다는 반론에 대해, 토마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빌려주는 자는 자신이 마땅히 가져야 할 어떤 것의 손실을 보상받는 협상을, 빌리는 자와 무죄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돈의 사용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빌려주는 자가 겪는 손해에 비해 더 큰 손해를 빌리는 자가 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빌리는 자는 자신이 유익을 보았을 경우 타인의 손해에 보상을 한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동안] 돈에서 결실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손실에 대한 보상은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직 갖지 않은 것,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을 팔아서 얻어 내기 때문이다.”³⁹⁾

이 대답에서 드러나듯, 토마스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손실에 대한 보상 요구권을 지닌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가 강조하는 것은 이 보상요구권이 실질손실에만 국한된다는 것이다. 돈을 빌려줌에 있어서의 실질손실은 빌린 자가 약정기한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는 상황, 즉 지불연기의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이 경우 빌려주는 자는 자신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자면, 이것은 대부업자가 대부로 갈취한 돈에 대해서 갈취당한 사람이 그만큼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면 일실이익에 관한 한, 토마스는 어떠한 보상 요구권도 인정하지 않는다.**⁴⁰⁾ 내가 그 돈을 빌려주지 않았더라면 그 돈으로 이

39) *Sum. theol.* II-II, q.78, a.2, ad 1. “(…) ille qui mutuuum dat potest absque peccato in pactum deducere cum eo qui mutuuum accipit recompensationem damni per quod subtrahitur sibi aliquid quod debet habere, hoc enim non est vendere usum pecuniae, sed damnum vitare. Et potest esse quod accipiens mutuuum maius damnum evitet quam dans incurret, unde accipiens mutuuum cum sua utilitate damnum alterius recompensat. Recompensationem vero damni quod consideratur in hoc quod de pecunia non lucratur, non potest in pactum deducere, quia non debet vendere id quod nondum habet et potest impediri multipliciter ab habendo.”

40) *De malo*, q.13, a.4, ad 14, “(…) ex pecunia mutuata potest ille qui mutuuat, incurrere

만큼의 이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돈을 빌린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는 ‘갖고 있지 않은 것을 파는’ 행위다. 그러므로 돈을 빌려주기로 약정한 기간 내에 발생할 기회비용 손실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대출 수혜자와 보상의 계약을 맺는 것은 불법적이다. 일실이익에 대한 보상 요구를 인정한다는 것은 대부 일체를 인정한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일실이익이 아쉬웠다면 애초에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다.⁴¹⁾

대부업자가 일실이익을 주장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빌려준 돈에서 현실적으로 생겨나는 이익에 아무런 참여나 기여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돈이 소모재의 일종인 이상,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빌린 사람에게 돈의 지배권을 넘겨주는 것이고 돈을 빌린 자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책임 하에 돈을 소유하며 그에서 비롯되는 위험 역시 감수한다. 돈을 빌린 자가 그 돈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그의 노력과 지혜의 결과이기에, 돈을 빌려준 자는 절대 그 중 일부라도 요구할 수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노력을 미리 팔아놓고 나서 이익 없는 모험을 벌여 돈을 탕진하고 타인에게 그것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면 그 얼마나 부조리한 일이겠는가.⁴²⁾

damnum rei iam habitae dupliciter. Uno modo, ex quo non redditur sibi pecunia statuto termino; et in tali casu ille qui mutuum accepit, tenetur ad interesse. Alio modo infra tempus deputatum; et tunc non tenetur ad interesse ille qui mutuum accepit. Debebat enim ille qui pecuniam mutuavit, sibi cavisse ne detrimentum incurreret. Nec ille qui mutuo accepit, debet damnum incurrere de stultitia mutuantis. Est etiam simile in emptione. Qui enim emit rem aliquam, tantum pro ea iuste dat quantum valet; non autem quantum ille qui vendit, ex eius carentia damnificatur.”

41) J. Noonan (1957), *The Scholastic Analysis of Usur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pp. 117-118.

42) *In III Sent.*, d.37, q.1, a.6, ad 4. “Quidquid autem de utilitate contingit ei cui mutuum dedi, ultra mensuram mutui ex pecunia mutuata, hoc est ex industria ejus qui sagaciter pecunia usus est: industriam autem ejus sibi vendere non debeo, sicut nec pro stultitia ejus minus habere debeo.”; *In IV Sent.*, d.15, q.1, a.5, quaestiuicula 2, ad 4 “(…)

대부에 있어 실질손실과 일실이익에 대한 토마스의 통찰은, 앞서 언급했던 가격 결정의 이중 원리에 대한 통찰과 연결되어 있다. 돈을 빌려주는 자와 돈을 빌리는 자의 관계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처럼 이해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타인의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팔지 않아도 되는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손해를 볼 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돈을 빌려주는 자는 지불 연기 때문에 실질손실을 볼 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그 물건으로써 이익을 실현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면(단지 내 이익을 얻지 못할 뿐이라면)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것처럼, 돈을 빌려주는 자는 일실이익에 대해 일체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돈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것의 사용에 의해 생겨난 이익은 온전히 채무자의 노력에 의한 것이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역측되는 돈에 기댄 것이 아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가격이론과 대부이론에서 드러나는 토마스의 경제 정의 사상은 교환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치와 이익의 동등성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교환적 정의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토마스는 이 개념이 “그 누구도 갖지 않은 것을 팔아서 안 된다”

ille qui subfodit semina, non tenetur ad tantum quantum agri fructus valituri erant, sed quantum ager sic seminatus valere consuevit; quia multis de causis potest impediri agrorum fructus. Et similiter dicendum est de eo cui debitum non restituitur suo tempore; quia non tenetur restituere tantum quantum lucrari potuisset; sed secundum aestimationem lucri quod accidere consuevit, pensato labore, et infortuniis etiam, quae in lucro accidere alias possent; quia lucrum non causatur tantum ex pecunia, sed ex industria et labore.”; O. Langholm (1993), *Economics in the Medieval Schools*, Leiden: Brill, p. 244.

는 타협의 여지없는 한 마디 명제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명제를 적용함으로써 토마스가 비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정의는, 다름 아닌 일실이익을 핑계로 판매 가격을 높이거나 이자를 붙여 받으려는 시도들이다.

정의로운 가격 이론과 대부 금지 이론은 토마스 경제 정의 사상의 핵심 일 뿐 아니라 소유권 개념과 더불어 중세 경제철학의 전형적인 의제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중세 스콜라 경제철학의 전체적 흐름 속에서 토마스의 위치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경제철학 문헌의 방대함 때문에 다른 스콜라철학자들과의 체계적인 비교는 차후의 연구를 기약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략한 흐름만 그려보도록 하자.

정의로운 가격은 로마법과 카롤링어 법에서 이미 중요시되었으며, 이 법전들이 12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용되기 전까지 사람들이 참조하던 주요한 원천이었다. 로마법적 전통은 재화의 내재적, 객관적 가치를 인정하기보다 구매자의 주관적 가치, 즉 구매자가 판매자와 합의한 가격을 정의롭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용에 따라 알베르투스 와 토마스는 『니코마코스윤리학』을 주해하며 가격 결정 요인으로서 필요 개념에 주목한다. 이것은 상품이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기존 관점의 연장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구매자의 필요(수요)의 상대 개념으로서 공급을 가격 결정 요인 중 하나로 보는 관점을 잠재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14세기 이후에 가서 본격적으로 표현된다. 구매자의 필요(수요) 뿐 아니라 판매자, 즉 공급자의 필요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14세기의 중요한 변화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변화’에 따라, 판매자 역시 자신의 생산 비용, 노동, 그리고 이윤을 지불 받기 위해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관념이 생겨난다.⁴³⁾

현실주의적 변화는 대부이론에서도 두드러진다. 로마법이 대부를 허용

43) M. Collish (1997), *Medieval Foundation of the Western Intellectual Tradition*, Ithaca: Yale University Press, pp. 330-332.

했던 데 비해, 성경은 대부를 명백하게 단죄한다. 교회법학자들이 대체로 이 두 전통을 억지로 조화시키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엄격주의와 온건주의로 나뉘어 있었음에 비해, 13세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전반적으로 엄격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토마스는 이러한 입장의 대표자였다. 자연법, 로마법,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용한 토마스의 엄격한 대부 금지 논변들은, 그 외의 다른 측면에서 토미즘에 동의하지 않는 스콜라철학자에게도 일반적으로 설득력을 발휘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대부에 대한 토마스의 엄격주의적 태도는 그 선명 성과는 별개로 — 또는 그 선명성 때문에 — 현실과의 긴장을 포함하고 있다. 그의 논변은 현실의 실천적 삶에 성경적, 신학적 원칙을 부여하려는 의도에 의해 규정되고 있었지만, 동시에 성경의 요구와 경제적 현실 간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의식 또한 전제하고 있다. 이 괴리에 대한 토마스의 인식은,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론의 차원에서 그 괴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도덕적이지 못한 현실을 도덕의 관점에서 그 자체로 단죄하려는 교부들의 단순한 열정과 는 의미심장한 차이가 있다. 토마스에게서 읽어낼 수 있는 이러한 인식은 14세기로 이행하며 — 가격이론과 마찬가지로 — 일종의 현실주의적 변화를 겪게 된다. 도시 간 상업과 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라 현실은 점점 더 이론에 압력을 가한다. 토마스 이후 경제철학적 관점의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람은 페트루스 요한네스 올리비(Petrus Johannes Olivi)다. 대부가 죄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자체는 변화하지 않지만, 올리비에게서 대부의 금지는 탁발수도회의 복음적 완전성을 위한 청빈의 조건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며, 세속 사회의 상인과 은행가들에게는 돈이 보여주는 도덕적 위험과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는 경고 정도의 의미를 갖게 된다.⁴⁴⁾

44) 관점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루카복음 6장에 대한 해석일 것이다. 토마스는 『악론』 13문 4절에서, 그리스도가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고 했던(루카 6, 30)라고 말씀이 “원수를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올리비가 살았던 13세기 후반~14세기 초반 프랑스 남부 도시의 경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지만, 도덕과 경제 현실을 분리하는 태도, 도덕적 원칙을 설파하면서도 현실적 경제 관계를 고려하는 태도는 — 실질손실과 일실이익에 대한 별개의 통찰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 이미 토마스에게서 예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랑하라”(루카 6, 27)라는 말씀처럼 권고’의 문맥에 있을 뿐이라는 대론(ob. 3)에 대해, 이러한 독해가 피상적일 뿐 아니라 바리새인적인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신자라면 마땅한 의무로 받아들여야 할 그런 것이다. 그러나 올리비는 같은 구절을 일종의 권고로 이해한다. 무상의 베품은 ‘복음적 완전성’(perfectio evangelica)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권고겠으나 보통 사람들에게는 의무 이상의 선행(supererogatio)을 뜻한다는 관점이다. *De malo*, q.13, a.4, ad 3. “(…) secundum superficiem litterae Evangelii potest esse sensus, quod dare mutuuum sit consilium; sed si detur mutuuum, quod detur absque spe usurarii lucri, hoc est praeceptum: et quantum ad primum ponitur cum consiliis. Vel potest dici, quod quaedam sunt secundum rei veritatem praecepta vel prohibitiones, quae tamen sunt supra praecepta secundum Phariseorum intellectum; sicut Matth., V, 22, super hoc praeceptum: non occides, quod Pharisei intelligebant de homicidio exteriori. Dominus superaddit: qui irascitur fratri suo, reus erit iudicio. Et hoc modo quantum ad Phariseos existimantes non esse prohibitum universaliter pecuniam ad usuram dari, ponitur inter consilia ut detur mutuuum absque spe usurarii lucri.”; Petrus Johannes Olivi, *De usuris*, “Sciendum tamen, quod quidam nimium exaggerantes, verbum Christi, *luce*, VI, dicentis: <Date mutuuum nichil inde sperantes>, putaverunt quod nullo modo licet prestitori aliquid amplius sperare aut recipere. Quod autem Christus hoc non intellexit in lectura super lucam ostenditur; sicut enim ex verbis Christi ibi premissis patet, Christi ibi loquitur de perfectione mutui supererogatorii, sive sit supererogatio consilii evangelica, sive sit supererogatio christiani precepti transcendentis iustitiam et gratiam gentilium ad invicem.” (ed. Todescini, pp. 74-75; trans. S. Piron (2016), *A treatise on Contracts*, St. Bonaventure N.Y.: Franciscan Institute Publication, p. 36).

참고문헌

【자 료】

- Aristoteles, *Nicomachean Ethics*, trans. W. D. Ro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 Augustinus, *De civitate Dei*, CCSL 47-48, Tournhout: Brepols, 1995. [아우구스티누스, 성염 역, 『신국론』, 분도출판사 2004]
- Aquinas, T., *Opera Omnia Iussu Impensaue Leonis XIII edita*, Roma 1882ff (ed. Leonina).
- Olivi, J. P., *Tractatus de Emptionibus et Venditionibus, de Usuris, de Restitutionibus*, ed. Giacomo Todescini, Roma 1980.
- _____, *A treatise on Contracts*, trans. Sylvain Piron, St. Bonaventure N.Y.: Franciscan Institute Publication,
- 바실리오스 외, 『부와 가난』, 박노양 역, 서울: 정교회출판사 2018.

【논 저】

- 남종국(2013), 「12세기 교회법학자 그라티아누스의 경제윤리」, 『대구사학』 112, 대구사학회, pp. 1-26.
- 박은구(2015),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제사상(2)」, 『승실사학』 35, 승실사학회, pp. 345-380.
- 손은실(2011),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로운 가격론에 대한 재해석」, 『서양중세사연구』 28, 서양중세사학회, pp. 129-158.
- 최원오(2016), 「고리대금의 죄악성에 관한 교부들의 가르침」, 『가톨릭철학』 24, 한국가톨릭철학회, pp. 5-38.
- Collish, M. (1997), *Medieval Foundation of the Western Intellectual Tradition*, Ithaca: Yale University Press.
- Langholm, O. (1998), *The Legacy of Scholasticism in Economic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Economics in the Medieval Schools*, Leiden: Brill.
- Noonan, J. (1957), *The Scholastic Analysis of Usury*, Cambridge, Massachusetts:

384 인문논총 제77권 제2호 (2020.05.31.)

Harvard University Press.

Wood, D. (2002), *Medieval Economic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원고 접수일: 2020년 4월 30일

심사 완료일: 2020년 5월 8일

게재 확정일: 2020년 5월 8일

ABSTRACT

Thomas Aquinas's Thought on Justice in Economics

Kim, Yul*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omas Aquinas's thought on economic justice based on his theory of the just price and usury. This paper insists that his theory of the just price and that of usury are intrinsically connected by sharing one common moral precept that nobody may not sell what he does not have. Aquinas's double principle for determining just price leads to his distinction between *damnum emergens* and *lucrum cessans* in his theory of usury. Aquinas approved the claim on *damnum emergens* whereas he negated the claim on *lucrum cessans*. Aquinas's treatments of *damnum emergens* and *lucrum cessans* shows that he was well aware of the tension between the doctrine of moral theology and the reality of economic life and that he attempted to reconcile this tension.

* Professor, Francisco College, Daegu Catholic University

